

瑞山市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2. 3. 27

총무위원회

1.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 2002. 3. 22

나. 提出者 : 瑞山市長

다. 回附日字 : 2002. 3. 22

라. 上程日字 : 2002. 3. 27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稅務課長 文哲柱)

가. 提案理由

- 現行 시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정리.
- 문화재에 대한 각면중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 되었으므로 관련조문을 삭제 하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타 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現行 서산시시세감면조례 개정

-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관련조문을 정리
“음성나환자집단촌” ⇨ “한센정착농원”, “나환자” ⇨ “한센환자”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로 관련조문 삭제
-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함
“종합토지세”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의 조문을 명확히 함.
“영위하는” ⇨ “영위한 자가 그”
- 시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 보완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개정 조례안 역시 그동안 감면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구 표현상의 불합리한 부분과 상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제1조 목적, 제10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4조의1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조문의 일부 문구를 보완하여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며
 - 제5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제13조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 등에 관한 감면은 상위 관련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임.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253 호
의 결	2002. 3. .
년 월 일	(제 회)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2. 3. 21.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3
----------	-----

제출년월일 : 2002. 3. 29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정리.
-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 되었으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타 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현행 서산시시세감면조례 개정
 -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정리
“음성나환자집단촌” ⇨ “한센정착농원”, “나환자” ⇨ “한센환자”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로 관련조문 삭제
-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함
“종합토지세”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의 조문을 명확히 함.
“영위하는” ⇨ “영위한 자가 그”
- 시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 보완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행정자치부 표준안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2. 2. 25 ~ 3. 16(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시사항 없음.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중 제목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중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제24조의1제1항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산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5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 ----- ----- -----</p>
<p>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p>	<p>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현행과 같음) ②-----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p>
<p>제13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p>	<p>제13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5조의규정에의한가공업자----- ----- ----- -----</p>

